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42
----------	-------

발의연월일 : 2026. 7. 24.

발 의 자 : 김도읍 · 구자근 · 김예지
이성권 · 이현승 · 주진우
김희정 · 고동진 · 조배숙
김은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또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연근해 어업 위축, 유류비 상승, 기후변화 등 구조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어업의 회복을 위하여는 어업 기반자산 취득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어업인이 어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 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 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 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 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 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 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1. ~ 3.(생략)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 <u>2028년 12월 31일</u> -----. 1. ~ 3.(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